대한비과학회 정보위원회 규정

(2011. 1. 4. 초안)
(2011. 3. 13. 제정)
(2014. 3. 9. 개정)

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비과학회 정보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대한비과학회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,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학회의 원활한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학회 관련 종합적인 정보화 인프라 구축
2. 학회 관련 정보의 수집,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
3. 학회의 역사 관련 자료 수집,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
4. 학회의 정보화에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운용
5. 기타 대한비과학회 회장이 요청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정보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② 정보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,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.
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본회는 위원장(정보이사)이 필요 시 개최한다.
② 회의는 정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재정) 본회의 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한다.

제7조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